

2018. 5.1.(화)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18년 4월 30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경제진흥본부 공정경제과

민생경제과장	김창현	2133-5360
민생대책팀장	윤정권	2133-5374
담 당 자	김광종	2133-5379
관련홈페이지	http://economy.seoul.go.kr/tearstop	

사진없음 사진있음 매수 : 11매

서울시, 5월 한달 불법대부업 피해 집중 신고기간 운영

- 고금리 대출·불법채권추심 등 불법사금융 집중접수, 녹취·사진 등 함께 제출해야
- 가명으로 신고 가능, 피해상담·구제·행정처분·수사의뢰·법률지원 등 원스톱 지원
- 시, 접수피해에 대한 구제는 물론 대포킬러 도입 등 소비자피해 사전예방에도 집중할 것

□ 서울시는 5월 한 달간 미등록 대부업 및 고금리, 불법채권추심, 불법대부 광고 등으로 인한 피해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내역 조서는 가명으로 작성되며, 신고내용은 피해자와의 1대 1 심층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종합·분석하여 민·형사상 소송절차 안내 등의 법률 지원 등 피해구제를 위한 실질적 지원에 나선다

○ 서울시는 불법대부업을 이용하는 경제적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불법대부업 피해상담센터’(‘16. 7. 설치)를 운영하여 불법대부업 이용으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 구제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있지만,

○ 여전히 신분노출을 우려하여 피해사실을 숨기고, 관련 법률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피해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 여전히 많은 시민들이 피해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 집중 신고 기간은 5월 1일(화)부터 31일(목) 까지 1개월간 운영되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울시 다산콜센터(☎120), 눈물그만(<http://economy.seoul.go.kr/tearstop>) 홈페이지,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 방문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 신고대상은 △미등록 대부업 영위, △이자제한법(최고이자 24%)을 위반한 불법고금리 대부(미등록 대부업자·사채업자), △대부업법(최고이자 24%)을 위반한 불법고금리 대부(등록대부업체), △폭행, 협박, 심야방문·전화 등 불법 채권추심 행위, 불법대부광고 등이다.

□ 피해 신고시에는 피해구제 및 향후 법률분쟁 등에 대비하여 대부관련 계약서, 원리금 상환내역서 등 본인의 대출내역과 휴대폰 녹취, 사진, 목격자 진술 등 불법사금융 피해관련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시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피해내용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미등록 대부업체는 즉시 수사 또는 세무조사를 의뢰하는 등 시민을 착취하는 고금리 대부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할 예정이다.

□ 시는 이번 ‘불법대부업 피해 집중 신고기간’을 통해 불법대부업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는 것은 물론 피해유형 및 대응요령 등을 널리 알리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있다.

□ 현재,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는 전문조사관, 민생호민관, 금융감독원 파견직원 등 5명이 상주하여 피해상담 및 피해구제 업무를 전담 처리하고, 필요시 변호사의 법률자문이 가능하다. 개소 후 올해 3월까지 총 749건의 피해신고를 접수받아 71건 16억 8천 4백만 원 상당의 피해를 구제했다.

○ 서울시금융복지상담센터(개인회생, 파산·면책, 채무대리인 지원), 법률구조공단(법률전문상담),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등 정부·민간단체 등이 연계해 피해구제에 나선다.

□ 또한 시는 길거리 광고전단지,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한 피해 예방을 위해 불법대부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 1,124건에 대해 이용정지를 요청했고, 작년 10월 ‘불법대부업 광고 차단용 전화 무제한 자동발신 시스템*(대포 킬러)’을 도입·운영해 올해 3월까지 총 788건의 통화를 차단하는 등 불법대부광고로 인한 소비자피해예방에도 집중하고 있다.

*불법대부업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전까지 해당번호로 무제한 자동발신 및 전화번호 이용정지 예정임을 알리고 서민들과의 통화를 차단

□ 김창현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이번 집중신고 기간 이후에도 불법 대부업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피해사례나 수법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하는 기본적인 대응부터 불법대부광고 차단을 위한 자동발신 시스템과 같은 전략적인 수단을 통해 소비자피해 사전예방 부분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붙임 : 불법대부업(사금융) 피해예방을 위한 소비자 유의사항

참고 1 불법대부업(사금융) 피해예방을 위한 소비자 유의사항

1 대출은 등록된 대부업체를 이용

- 대출권유 전화 등을 받는 즉시 등록 대부업체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해당 대부업체를 통해 실제 대출신청 접수 여부를 확인
- * 등록된 대출중개업체 및 대부업체는 등록 대부업체 통합조회서비스(한국대부금융협회, <http://www.clfa.or.kr> ⇒ 등록업체조회)에서 확인 ②등록 대출모집인은 대출모집인 통합조회시스템(은행연합회, <http://www.kfb.or.kr> ⇒ 대출모집인)에서도 조회 가능

3 법정 최고금리 초과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

- 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24.0%)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이므로 초과지급된 이자는 원금충당하고 남은 금액은 반환 요구

2 대부원리금 상환내역 등 대부계약 관련서류를 철저히 관리

- 대부계약 체결시 대부금액, 기간, 이자율 등 확인 후 자필기재
- 대부계약서, 원리금 상환내역서 등 대부계약 관련서류를 철저히 관리하여 향후 고금리 분쟁에 대비

4 대출시 선이자는 대출원금에서 제외

- 대출수수료 등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간주하고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하는 경우 그 공제액은 대출원금에서 제외

5 문자, 인터넷, 생활정보지 등을 통한 허위·과장 광고에 유의

- “ 최저금리 대출 가능 ” “ 누구나 대출 ”, “ 신용불량자 가능 ” 등 허위·과장 광고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현혹되지 않도록 유의

6 신용등급 상향 수수료 등 대부중개수수료 지급요구는 불법

- 대출상담시 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를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는 것은 대출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상담을 중단하고 이에 응하지 않도록 유의

7 고금리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준다는 대부광고 주의

- 바뀔드림론, 햇살론 등 한국자산공사 등에서 취급하는 저금리대출로 전환해 준다는 대출권유에 유의
- 먼저 고금리 대출을 받도록 유도한 후 연락이 되지 않거나 전산작업비용, 신용등급 상향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하는 대출사기가 대부분

8 불법채권추심시 증거자료 확보

-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전화.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추심하거나 가족.친지에게 연락하여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등은 불법
- 휴대전화 녹화.녹음.증인 등 관련 증빙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 120), 경찰서(☎ 112)에 적극적으로 신고

9 대부업자, 채권자 명의 계좌외의 계좌로 입금요구시 거부

- 채무상환은 대부업자 또는 채권자 명의계좌로 입금하여 객관적 증빙을 확보하고,
- 채무변제를 완료한 경우 채무변제확인서를 교부받아 최소 소멸시효 완성기간인 5년 이상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

10 캐피탈, 은행 등 금융회사 사칭에 유의

- 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임을 사칭하면서 대출에 필요하다며 주민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체크카드, 통장 등 관련 서류를 요구할 경우 미등록업체이거나 개인정보유출 등 피해가 우려되므로 주의 필요

참고 2 불법대부업 주요 피해상담 및 구제 사례

피해상담 사례 1 자영업자에 대한 불법 고금리 대부

- ◇ 서울 강남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던 김모씨(40대 여성)는 운영자금이 필요하던 중 '16.1월경 길거리 명함형 전단지'를 보고 4곳의 미등록 대부업자로부터 216백만원의 대출을 받음
- ◇ 김모씨는 총 261백만원을 상환하였으나, 미등록 대부업자는 원금 및 연체이자 명목으로 36백만원을 추가 상환할 것을 요구(연 금리로 환산시 150%~240%)
- ◇ 김모씨는 미등록 대부업자의 계속되는 전화 및 방문을 통한 상환 요구로 폐업을 고려하던중 서울시 불법대부업 피해상담센터에 도움을 요청

센터 피해구제 사례

- ◇ 상담센터에서 김모씨의 원리금 상환내역에 대한 계산결과 3개 업체는 총 46백만원의 초과상환금 발생(1곳은 잔존채무 5백만원)
- ◇ 상담센터에서 4곳 미등록 대부업자에게 법정이자율 25%를 초과한 계약은 무효임을 알리는 등 법 위반사실을 고지
- ⇒ 미등록대부업체가 초과상환금 46백만원중 36백만원을 반환하고, 추가 요구액 36백만원은 채무면제 합의 등 총 76백만원의 채무 구제후 종결(잔존채무 5백만원은 전액 상환후 채무종결)

- ◇ 서울 남대문시장에서 의류매장을 운영하던 서모씨(60대 여성)는 운영자금이 필요하던 중 남대문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미등록 불법사채업자 3곳으로부터 일수사채 이용
- ◇ 피해자가 사채업자로부터 실제 수령한 대출금액은 약 26백만원으로 원리금 약 28백만원을 상환하였으나, 사채업자는 원금 및 연체이자 명목으로 25백만원을 추가 상환할 것을 요구(연 이자율 약 300%~580%)
- ◇ 피해자는 가게를 폐업하고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중 이를 알게된 사채업자가 채무액 상환을 요구하면서 피해자 집과 가게로 찾아와 위협하는 등 불법적인 추심을 당하자 서울시 불법대부업 피해상담 센터에 도움을 요청

센터 피해구제 사례

- ◇ 불법대부업체 3곳에 대한 채무금액 계산결과 명목상 대출금액은 44백만원으로 선이자(26백만원) 공제후 실 대출 원금 26백만으로 확정 - 2곳은 약 150만원 초과상환, 1곳은 잔존채무(27만원) 발생,
- ◇ 상담센터에서 3개 사채업자와 직접 통화하여 원금 및 법정이자율 25%를 초과한 금액은 무효임을 법 위반사실을 고지
- ⇒ 초과지급금이 발생한 2곳은 사채업자가 추가상환요구액 25백만원을 포기하는 한편 불법채권추심을 중단하는 등 채무관계를 종결하였고, 잔존채무에 대해서는 채무상환 후 채무완납증명서 수령

- ◇ 서울시 강동구 거주하는 한00씨(30대, 여성)는 2014년 5월 미등록 대부업자로부터 100일간 하루 6만원 상환조건으로 500만원을 대출을 받고 체크카드를 제공
- ◇ 피해자는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을 조기 전액 상환하였으나, 불법 대부업자는 일수상환 연체 등을 이유로 매 3개월마다 대부계약서를 신규 작성하는 방법 등으로 증액된 대출금의 상환을 요구
- ◇ 채무자는 2014년 5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총 39백만원을 상환하였으나, 추가로 40백만원을 상환할 것을 요구하면서 피해자의 직장 등으로 상환을 독촉하는 등 불법채권추심행위를 지속하자 피해자는 보복이 두려워 거주지를 옮기는 등 극도의 심리불안 상태에서 서울시에 도움을 요청

센터 피해구제 사례

- ◇ 민원인의 채무금액 계산결과 선이자를 제외한 실질 대출금액은 426만원으로 총 39백만원 상환하여 초과상환금 34.6백만원 발생하였고, 이자율은 264.1%로 법정이자율을 초과
- ◇ 상담센터에서 불법대부업자와 직접 통화하여 원금 및 법정이자율 25%를 초과한 금액은 무효임을 안내하고 상담센터 출석을 요구
- ⇒ 민원인 입회하에 부당이득금 15백만원을 반환 및 추가상환 요구액을 포기하는 내용으로 합의하고, 불법 채권추심을 중단

- ◇ '15년 7월경부터 서울 강남구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던 황모씨(50대 여성)는 명함형 진단지를 보고 미등록 사채업자 2곳으로부터 대출을 받음
- ◇ 민원인은 사채업자로부터 대부 및 상환을 반복하면서 총 625백만원을 대출받고 총 686백만원을 상환하였으나 사채업자는 원금 및 연체 이자 명목으로 63백만원을 추가 상환할 것을 요구
- ◇ 민원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사채업자는 민원인의 주택전세금을 가압류하면서 상환을 독촉하자 서울시에 도움을 요청

센터 피해구제 사례

- ◇ 센터에서 명목상 대출금 625백만원에서 선이자 27백만원을 공제한 598백만원을 채무금액을 확정 후 민원인의 채무금액을 계산한 결과 87백만원의 초과상환금 발생
- ◇ 대부이자율은 176%~220%로 상담센터에서 2개 사채업자와 직접 통화하여 원금 및 법정이자율 25%를 초과한 금액은 무효임을 안내하고 법 위반사실을 고지
- ⇒ 사채업자가 추가 상환요구액 63백만원을 포기하고 주택 전세금 가압류를 해제하고 채무완납증명서 수령후 종결